

반론보도청구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

김현태

창원대 법학과 교수

I. 들어가는 말

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오늘 현재 18년 8개월여가 흘렀다. 이러한 언론의 축적은 동시에 언론중재제도를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그 동안 연도별 중재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며 1998년에는 급기야 602건의 중재신청 사건이 접수되기에 이르렀다.¹⁾

이러한 추세와 아울러 최근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특징은 <표 1>, <표 2>, <표 3>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방송사 및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신청 건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전체 중재신청사건에서 반론보도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.

<표 1> 연도별 방송사 대상 중재신청 건수 구성비율²⁾

연도 \ 구분	총 건수	방송사대상 중재신청건수	구성비율(%)
1996	556	72	12.9
1997	490	88	18.0
1998	602	146	24.3

1)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해인 1981년 전국에서 접수된 중재신청 사건이 불과 44건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 무려 13.6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.

2) 방송사에는 중앙방송사, 지역방송, CATV가 포함된 것이다. 통계수치는 1996, 1997, 1998년도 연차보고서 참조.

<표 2> 연도별 주간신문 대상 중재신청 건수 구성비율³⁾

연도\구분	총건수	주간신문대상 중재신청건수	구성비율(%)
1996	556	100	18.0
1997	490	98	20.0
1998	602	129	21.4

<표 3> 연도별 반론·정정보도 청구 구성비율⁴⁾

연도\구분	전국단위				경남중재부			
	반론보도	정정보도	추후보도	총건수	반론보도	정정보도	추후보도	총건수
1996	109 (38.9%)	161 (57.5%)	10 (3.6%)	280	2 (11.1%)	16 (88.9%)	0 (0%)	18
1997	203 (41.4%)	270 (55.1%)	17 (3.5%)	490	11 (55%)	9 (45%)	0 (0%)	20
1998	228 (37.9%)	369 (61.3%)	5 (0.8%)	602	7 (38.9%)	11 (61.6%)	0 (0%)	18

특히 <표 3>에서 나타나듯이 반론보도청구가 전체건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0% 전 후에 육박하고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. 그런데 종종 각 중재부의 중재현장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반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거나, 또는 일반시민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서로 혼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반론보도 게재 자체가 마치 앞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인 양 자신을 변호하고 사실관계를 오도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론보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강한 저항 내지는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.

그러나 이 반론보도청구는 명예훼손의 정도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반대의 주장을 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정되므로 일반시민이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은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하겠다.

따라서 다음에서는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기본적 성질과 그 요건 등을 검토하고 정정보도와 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언론인과 일반시민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.

3) 주간신문에는 시사주간지, 시사주간신문, 지역주간신문, 특수주간신문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. 통계수치는 상기 연차보고서 참조.

4) 1996년도의 통계치는 개정법 시행후 1996.7.1~1996.12.31 간의 자료에 의한 것임. () 안의 수치는 총건수에 대한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임.